

주주님께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1조에 의거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1년 3월 24일(수)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256번길 4 (주)원일특강 4층 강당

3. 회의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 1) 감사의 감사보고
- 2) 영업보고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상기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와 당사 정관 제50조에 의거 외부 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의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세부내용 별첨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세부내용 별첨 참조)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의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우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지참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2021년 3월 일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256번길 4

주식회사 원일특강

대표이사 신용문 (직인생략)

[별첨]

□ 제2호 의안 : 정관일부변경 건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b>제8조의2(주식등의전자등록)</b>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b>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b>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u>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 비상장 사채 등의 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p>
<p><b>제9조의1(신주의 배당 기산일)</b>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b>제9조의1(신주의 동등배당)</b>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p>	<p>-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p>
<p><b>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b> ① ~ ④ (생략) ⑤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1의 규정에 준용한다.</u></p>	<p><b>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b>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9조의1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p>
<p><b>제43조(감사의 선임)</b> ① <u>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u></p>	<p><b>제43조(감사의 선임·해임)</b> ① <u>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u> ② <u>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u></p>	<p>-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정비</p>
<p>② <u>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0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p>	<p>③ <u>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0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u></p>	<p>-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 반영 및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정비</p>
<p>&lt;신설&gt;</p>	<p>④ <u>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0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u></p>	

<p>&lt;신설&gt;</p>	<p><u>⑤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p>	<p>- 감사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p>
<p><b>제50조(제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b>  <b>① (생략)</b>  <b>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p>	<p><b>제50조(제무제표 등이 작성등)</b>  <b>① (현행과 같음)</b>  <b>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p>	<p>-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 정비함.</p>
<p><b>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b>  <b>④~⑧ (현행과 같음)</b></p>	<p><b>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b>  <b>④~⑧ (현행과 같음)</b></p>	
<p>&lt;신설&gt;</p>	<p><b>부 칙</b>  <b>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b></p>	
	<p><b>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b>  <u>제43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u></p>	<p>- 부칙신설</p>
	<p><b>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b>  <u>제43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u></p>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관계	회사와의 거래관계	선임여부
신용문 (55.09.09)	현)원일특강 대표이사	이사회	임원	없음	재선임
박성진 (73.01.11)	현)원일특강 부회장	이사회	본인	없음	재선임
최극태 (62.01.15)	전)동부제강 탐장 전)세아특수강 이사 현)원일특강 전무	이사회	임원	없음	신규선임

□ 위임장 양식

위임장

대리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상기 대리인에게  
주식회사 원일특강의 제44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1년 3월 일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